사법판결 관련 언론보도의 현황과 특성

김 창 숙
언론중재위원회 정책연구팀, 언론학 박사

Ⅰ. 서 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와 관련된 사법판결의 결과에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된 경우, 사람들은 법원이 사건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내려줌으로써 어떤 시각이 더 옳은지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 갈등당사자들도 판결에 의해 자신들의 정당성을 입증해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따라서 언론은 일반 국민들에게 판결내용 뿐만 아니라 사회적 맥락 속에서 판결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통찰력 있는 시각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사법판결관련 언론보도는 국민의 알권리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사법판결에 대한 언론보도는 때때로 사법권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고 명시하여 사법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와 직결된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어떠한 외부요인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는데, 때때로 언론의 과도한 보도행태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판결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판결 결과만을 부각하여 비판하는 보도행태는 국민들로 하여금 재판제도 자체를 불신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한위수, 1994).

이런 논의들은 사법판결에 대한 언론보도의 행태가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뉴스 연구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뉴스가 구성되는 방식'이 수용자의 의견형성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이준웅, 2001, p.443)' 고 생각해왔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사법판결관련 뉴스의 구성방식이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파악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아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탐색적인 수준이나마 사법판결관련 뉴스의 구성 방식을 내용분석을 통해 알아봄으로써 향후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법판결을 중심으로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의 보도 특성을 비교하되, 판결내용과 신문 성향이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구분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는 판결을 둘러싸고 보수측과 진보측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던 만큼 신문의 성향을 고려해야만 데이터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판결내용과 신문 성향의 일치여부에 따라 해석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또한 분석에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진보성향의 판결결과에 대한 비판적 논조의 기사가 어떤 성향의 신문에 게재되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 연구는 사법판결관련 언론보도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신문 성향과 판결내용의 일치 여부까지 고려했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사법판결보도 관련 선행연구

사법보도를 둘러싸고 사법부와 언론은 자주 갈등의 양상을 보인다. 이는 '공정한 재판'과 '언론의 자유'라는 두 헌법적 가치가 충돌함으로써 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법보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사법부와 언론의 입장차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 즉, 한쪽에서는 언론의 보도행태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한다거나 명예훼손,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

"뉴스의 구성방식이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법관련 언론보도의 특성을 파악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육정수(2002)는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기자들의 취재관행이 과거에 비해 크게 바뀌지 않았으며, 현직 판사 36.7%가 신문보도 내용이 그 사건의 재판진행과정이나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직접적으로 사법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언론보도나 범죄보도 등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는 연구들은 많이 찾아볼 수 있다(김경호, 2004; 김선택, 2004; 이승선, 김연식, 2008). 한편, 박철(1999)은 좀 더 강경한 어조로 언론의 허위사례와 이에 대한 판사들의 대처 사례를 제시하며 "판사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무책임한 언론이 초래한 인권침해의 위험성 및 사회적 폐해, 그

리고 무책임한 언론에 대해 정당한 몫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판사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임을 인식하게 되었다(p.90)"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사법보도에 대한 언론보도의 자유를 주장하는 입장이 있다. 이들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그리고 사법보도 제한으로 인한 언론의 위축효과를 강조한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에 대한 소송은 언론의 위축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언론이 보도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윤성옥(2008)은 사법보도에 대한 언론의 자유의 보호법리와 법리 적용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검사와 판사들이 제기한 언론사 상대 판결문을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국내에서 문제가 된 사법보도는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보다 사법행위나 결과에 대한 비판으로 오히려 국민이 공정한 재판(수사)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보도를 주로 문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하지 않는 사법보도가 아닌 사법제도와 운용에 대한 비판과 견제로서의 사법보도에 대한 언론의 비판기능을 적극 수용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사법보도와 관련된 이런 갈등은 언론윤리를 바라보는 언론과 사법부의 시각차에서 어느 정도 비롯된 것 같다. 이재진(2005)은 언론은 언론윤리를 취재 · 보도 과정에서의 특정 행위와 연결시키려고 하며, 당위성의 문제보다는 정도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사법부는 추상적인 사회적 기능이나 역할과 연결시키려 하는 시각차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언론윤리에 대한 양측의 기본적인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법보도에 대한 양측의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2. 뉴스 구성방식에 대한 연구

뉴스에 대한 내용분석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진행되었지만, 여기서는 이 연구에서 분석할 문항들과 관련된 선행연구들만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1) 뉴스 내용분석 요소

뉴스 내용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분석틀이 필요한데, 사법판결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내용분석이 지금까지 부재했기 때문에 기존의 틀을 활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내용분석의 분석문항을 추출하기 위해 다른 주제의 뉴스를 내용분석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김계춘, 2007; 남재일, 2004; 장호순 외, 2001; 한국언론재단 2007 등). 그 결과, 분석문항으로 헤드라인, 지면, 기사논조, 기사 쟁점, 기사쟁점 제시방식, 내용구성, 취재원 분석 등을 추출하였다. 헤드라인 분석을 시도한 것은 헤드라인이 이미 언론행위의 핵심적 일부로 자리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이상국, 2007). 기사 본문의 분석문항은 지면, 기사논조, 기사 쟁점, 취재원 등 다른 주제의 뉴스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분석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추출하였다. 특히, 취재원은 뉴스의 중요한 구성적 요소로서 이에 대한 심층분석을 진행한 연구들도 있다(장호순 외, 2001; 홍권희, 2008).

(2) 복잡성

복잡성(complexity)이란 사건이 진행되면서 거치게 되는 단계들이 있는데, 이를 뉴스에서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뉴스의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독자들은 사건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사건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사건의 원인, 사건관련자의 동기, 과정, 결과, 반응, 대안 등을 미디어가 얼마나 보도하고 있는지를 측정해왔다(강명구, 1990; 김동규, 2001; 손승혜, 1999; 이준웅, 황유리, 2004). 이들 연구는 국내 뉴스가 심층성이 부족하고, 사건의 원인과 배경, 반응에 대해 심층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과정/결과만을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3) 프레임 분석

아이엔거(Iyengar, 1991)는 범죄, 국제 테러리즘, 빈곤, 실업, 인종적 불평등에 관한 뉴스를 분석하기 위해 구체적인 예나 특정 사건 중심으로 보도하는 일화적 프레임(episodic frame)과 사회구조, 역사적 배경 등 추상적인 상황에 공적 이슈를 위치시키는 주제적 프레임(thematic frame)을 사용하였다. 그는 프레임에 따라 책임의 귀인을 제시하는 방식이 달라지는지도 분석하였는데, 일화적 프레임에서는 사건의 책임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주제적 프레임은 사회구조적, 정치적, 일반적인 차원에서 속성화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이후 아이엔거의 일화적/주제적 프레임 구분은 많은 연구에 적용된 바 있다(김선남, 2002; 양정혜, 2001; Entman, 1993; Iyengar & Simon, 1993). 이들 연구들의 대부분은 뉴스가 일화적 프레임을 많이 사용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4) 사설/칼럼 분석

맥퀘일(McQuail, 1992)은 보도영역을 객관적인 영역과 비객관적인 영역으로 나누었다. 객관적인 영역에서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지만, 비객관적인 영역에서는 글쓴이의 의도적인 판단이 들어간 영역이다. 이 분류를 따르면 사설/칼럼은 후자로서 객관성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객관적인 영역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신문 사설 연구는 국내에서 1950년대에 이미 시작되었고, 1990년대를 들어서면서 연구주제와 방법론이 다양해지며 발전적인 모습을 보였다. 사설의 내용분석(김성호, 1993), 신문사간 사설 비교(김영준, 2004; 김효진, 2009; 이원섭, 2007), 사설의 영향력(정윤수, 정석영, 2001), 사설에 나타난 담론(이진로, 2000)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이 진행된 것이다. 이 연구와 관련된 신문사간 사설을 비교한 연구결과들을 보면, 신문성향별로 사설 구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김영준(2004)은 주요 현안에 대해 보수와 진보신문의 구분이 뚜렷하다고 하였다.

"국내 뉴스들은 일화적 프레임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화적 프레임은 사건의 책임을 사건당사자에게 돌림으로써 더 근본적인 원인인 사회적, 정치적 구조를 존속시킬 위험이 있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이 연구는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헤드라인 분석이다. 헤드라인은 독자들이 뉴스에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으로서,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관심을 끌어 본문을 읽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뉴스제작자들은 헤드라인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으려고 한다. 따라서 헤드라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헤드라인의 특징으로 헤드라인 유형, 헤드라인 표현, 헤드라인 논조 등을 분석할 것이다.

둘째는 기사 본문 분석이다. 이는 기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사논조, 주요 쟁점, 기사 쟁점 제시방식, 내용구성, 복잡성, 프레임, 취재원 분석 등이 포함될 것이다.

셋째는 사설/칼럼 분석이다. 사설/칼럼은 글쓴이의 의도적인 판단이 들어간 글이므로 스트레이트나 해설/기획 기사에 적용한 분석틀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헤드라인 분석과 기사 본문 기사에서 사설/칼럼은 제외하고 이를 별도로 분석하고자 한다. 사설/칼럼에 대해서는 기사논조, 작성자 유형, 주요 쟁점에 대해서만 분석을 할 것이다.

이에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신문성향별 사법판결 관련 언론보도의 헤드라인 구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신문성향별 사법판결 관련 언론보도의 뉴스 본문 구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신문성향별 사법판결 관련 언론보도의 사설/칼럼 구성은 어떠한가?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2010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에서 다룬 사법판결 보도 중에 '강기갑 의원 국회 사건[1]', '전교조 시국선언',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된 기사 전체를 분석했다. 세 사건은 판결내용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간에 첨예한 대립이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던 터라 다른 판결에 비해 많이 기사화되었다. 대상매체는 보수(조선일보, 중앙일보)와 진보(한겨레, 경향신문)의 보도 경향을 비교하기 위해 성향별로 2개씩 선정한 것이다. 자료수집은 각 신문사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일자별 기사제목을 일일이 검토하여 기사의 목록을 작성한 후, 직접 기사의 내용을 확인하여 최종 분석대상을 확정하였다. 기사 내용은 신문사의 웹사이트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도서관의 신문검색 서비스를 활용하여 확인하였다.

분석틀은 뉴스 내용분석을 진행한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분석문항들을 추출하였다. 그러나 문항별 항목들은 기존에 사법판결관련 보도를 양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사전 분석을 통해 귀납적으로 추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40개의 뉴스를 사전 분석하여 각 문항별로 새로운 항목이 나올 때마다 추가하여 코딩한 후에 비슷한 항목끼리 결합하여 문항별 항목을 완성하였다. 이 분석틀은 사전코딩 과정을 거쳐 재수정되었고,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사전코딩은 연구자와 언론학 박사 1인이 참여하여 20개의 기사를 분석한 후 홀스티(Holsti, 1969)의 공식[2]을 적용하여 코더간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비교적 명확하게 분석되는 문항이 많았기 때문에 1차

1) 신문성향에 따라 '국회 폭력', '국회 항의' 등으로 사건의 성격을 달리 규정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이 연구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 '강기갑 의원 국회 사건'으로 명기하도록 하겠다.
2) CR=nM/(N1+N2+...+Nn), M은 코더간 일치한 사례수, N은 각 코더가 코딩한 사례수, n은 코더수

에서 전체 평균으로는 80%를 넘었다. 하지만, 신뢰도가 70%를 밑도는 일부 문항이 있어 코더간 논의를 거친 후 이들 문항에 대해서만 재코딩을 반복하여 모든 문항의 코더간 신뢰도를 75% 이상으로 높인 후 본 코딩을 진행하였다. 코딩된 데이터는 PASW Statistics 18.0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교차분석,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개 요

분석에 최종 포함된 기사는 총 193건이었으며, 조선일보 42.0%, 중앙일보 17.6%, 한겨레 20.2%, 경향신문 20.2%로 구성되었다[3] (<표 1> 참조). 전체 기사 중에 1면 기사는 24건으로 조선일보 9건, 중앙일보 6건, 한겨레 5건, 경향신문 4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건별로는 'PD수첩의 광우병보도'가 38.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교조 시국선언(28.0%)', '강기갑 의원 국회 사건(24.9%)'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판결을 함께 언급한 기사는 8.8%였다. 다른 신문들은 'PD수첩의 광우병보도'를 가장 많이 보도한 것과 달리 중앙일보는 '전교조 시국선언'을 가장 많이 다루었고, 경향신문은 두 판결을 비슷한 비율로 다루었다.

기사유형은 '해설/기획' 기사가 40.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스트레이트'가 34.7%, '사설/칼럼'이 18.1%, '인터뷰'가 6.7%로 나타났다. 스트레이트와 해설기사는 구분이 모호한 기사들이 있었는데, 사실 전달 중심의 기사는 '스트레이트'로, 해설성 스트레이트는 '해설/기획'으로 분류하였다. '인터뷰 기사'는 특정인을 인터뷰한 기사로서 보수신문에서 12건, 진보신문에서 1건이 발견되었다. 보수신문의 인터뷰 대상은 법조인 5건, 고소인 3건, 전문가 2건, 관련부처와 증인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신문들은 판결내용에 대해 자신들과 일치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만을 인터뷰 기사 대상으로 구성하는 특징을 나타냈다"

변호사나 판사 등 법조인 인터뷰는 주로 판결법리의 적절성에 대한 내용이었고, 증인은 피고소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증인이었다. 또한 고소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가 3건 있었다. 진보신문의 인터뷰 1건은 피고소인과의 인터뷰였다. 인터뷰가 모두 진보성향과 일치하는 판결(무죄판결)에 대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인터뷰 대상을 자신들의 성향과 일치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특징을 보였다. 사설/칼럼은 전체 기사 유형 중 18.1%를 차지했으며, 빈도면에서는 조선일보가 가장 높았으나 비율면에서는 경향신문이 더 높았다.

신문성향과 판결내용과의 일치여부[4]에서는 분석대상기간 중의 판결의 대부분이 진보성향과 일치하는 방향(무죄판결)으로 났기 때문에 보수성향의 경우 불일치가, 진보의 경우 일치가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강기갑 의원 국회 사건'과 'PD수첩의

3) 관련 기사를 전수 분석했기 때문에 실제 기사량이 많은 조선일보의 비율이 높아졌다. 따라서 대부분의 분석은 비율을 기준으로 했으며, 빈도는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경우에만 언급하였다.
4) 사건의 성격과 기사 내용들을 검토하여 신문성향과의 일치여부를 판단하였다.

광우병 보도'는 진보성향과 일치하는 판결(무죄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전교조 시국선언'은 법원에 따라 무죄와 유죄 판결이 엇갈리면서 보수신문의 일치와 진보성향의 불일치가 나타났다. 혼합은 사설/칼럼에서 최근 판결을 전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들에서 나타난 것이다.

2. 헤드라인 구성의 특성

(1) 헤드라인 유형

헤드라인의 유형은 '객관적'과 '감정적'으로 분류하였다. 객관적 헤드라인은 '전교조 시국선언 '유죄:무죄=3:2' 청주지법, 벌금 150만원 선고(조선일보, 3. 10)', '강기갑 국회폭력 혐의 '무죄'(경향신문, 1. 15)' 등과 같이 객관적인 정보로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감정적 헤드라인은 '강기갑 의원 무죄 등 '문제적 판결' 속출… 요즘 법원 왜 이러나(조선일보, 1. 16)', '판사 개인 잣대로 … 참 기가 막힌다(중앙일보, 1. 21)' 등과 같이 주관적인 표현이나 평가가 가미된 것을 의미한다. 객관적 헤드라인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반면, 주관적인 표현은 독자들을 유도할 수 있지만, 기사 내용을 잘못 인식시킬 가능성이 있다(김서중, 2007, p.19).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성향에 관계없이 객관

<표 1> 분석대상 구성

단위: 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전 체
사건유형	강기갑 의원 국회 폭력	20(24.7)	10(29.4)	11(28.2)	7(17.9)	48(24.9)
	전교조 시국선언	20(24.7)	12(35.3)	9(23.1)	13(33.3)	54(28.0)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33(40.7)	10(29.4)	17(43.6)	14(35.9)	74(38.3)
	혼 합	8(9.9)	2(5.9)	2(5.1)	5(12.8)	17(8.8)
기사유형	스트레이트	22(27.2)	15(44.1)	19(48.7)	11(28.2)	67(34.7)
	해설/기획	36(44.4)	10(29.4)	13(33.3)	19(48.7)	78(40.4)
	인터뷰	9(11.1)	3(8.8)	1(2.6)	–	13(6.7)
	사설/칼럼	14(17.3)	6(17.6)	6(15.4)	9(23.1)	35(18.1)
일치도	일 치	9(11.1)	6(17.6)	36(92.3)	31(79.5)	80(41.5)
	불일치	67(82.7)	27(79.4)	3(7.7)	6(15.4)	105(54.4)
	혼 합	5(6.2)	1(2.9)	–	2(5.1)	8(4.1)
계		81(100.0)	34(100.0)	39(100.0)	39(100.0)	193(100.0)

<표 2> 신문성향별 일치도에 따른 헤드라인 유형

단위: 건(%)

구 분	보수성향			진보성향			전 체
	일 치	불일치	소 계	일 치	불일치	소 계	
객관적	14(100.0)	40(49.4)	54(56.8)	29(52.7)	8(100.0)	37(58.7)	91(57.6)
감정적	–	41(50.6)	41(43.2)	26(47.3)	–	26(41.3)	67(42.4)
계	14(100.0)	81(100.0)	95(100.0)	55(100.0)	8(100.0)	63(100.0)	158(100.0)

적 헤드라인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표 2> 참조). 구체적으로 보수신문은 자신들의 입장과 일치하는 판결의 경우, 반대로 진보성향은 불일치한 경우에 객관적인 헤드라인을 100% 사용하였다. 그러나, 보수신문은 불일치할 때 감정적 헤드라인이 50.6% 사용된 반면, 진보성향은 판결의 결과와 자신들의 성향이 일치할 때 47.3%나 감정적 헤드라인을 사용하였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성향이나 일치여부에 따라 헤드라인 유형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 기사의 수가 많다 보니 두 가지 유형이 모두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 반면, 관련 기사수가 적을 때는 일단은 판결결과를 알리는 기사들이 필요하므로 사실 전달 중심의 객관적 헤드라인을 많이 사용하는 듯 보인다.

(2) 헤드라인 표현

'헤드라인 표현'이란 문장의 표현방식을 의미한다. 위에서 객관적 헤드라인이 많았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전체적으로는 단순한 사실을 알려주는 '정보형'이 양측 모두에서 가장 많게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표현에서는 성향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보수신문은 '인용형(37.9%)'을, 진보신문은 '평가형(19.0%)'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표 3> 참조).

"신문들은 성향에 관계없이 객관적인 헤드라인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객관적 헤드라인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인용형'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누구의 말을 인용했는가를 분석한 결과 보수신문은 법조인(11건), 검찰(5건), 여당, 담당판사(각 4건), 전문가(3건), 피고소인, 시민단체(각 2건), 야당, 일반인, 증인, 관련부처(각 1건) 등으로 인용주체가 다양한 반면, 진보신문은 담당판사, 피고소인, 전문가(각 2건)만을 인용했다. 보수신문은 판결내용이 불일치한 경우 인용형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판결내용을 비판하는 다양한 계층의 반응을 인용하여 헤드라인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진보성향의 판결(무죄)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인용주체가 대부분 신문성향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인용형은 신문사가 직접 판결내용을 옹호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원하는 바를 전달할 수

<표 3> 신문성향별 일치도에 따른 헤드라인 표현

단위: 건(%)

구 분	보수성향			진보성향			전 체
	일 치	불일치	소 계	일 치	불일치	소 계	
인용형	1(7.1)	35(43.2)	36(37.9)	6(10.9)	–	6(9.5)	42(26.6)
정보형	13(92.9)	28(34.6)	41(43.2)	23(43.4)	8(100.0)	31(49.2)	72(45.6)
의문형	–	2(2.5)	2(2.1)	3(5.5)	–	3(4.8)	5(3.2)
갈등형	–	11(13.6)	11(11.6)	11(20.0)	–	11(17.5)	22(13.9)
평가형	–	4(4.9)	4(4.2)	12(21.8)	–	12(19.0)	16(10.1)
요구형	–	1(1.2)	1(1.1)	–	–	–	1(0.6)
계	14(100.0)	81(100.0)	95(100.0)	55(100.0)	8(100.0)	63(100.0)	158(100.0)

있다는 점과 화자의 공신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문사에게는 유용한 표현 방법이라 보여진다.

진보신문에서 많이 사용한 '평가형'은 사건을 정의하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진보신문의 평가형 헤드라인은 '보수언론 '촛불 배후론'은 '마녀사냥'이었다(한겨레, 1. 21)', '여당 사법권 흔들기 도넘었다(경향신문, 1. 20)' 등과 같이 보수측의 판결에 대한 비판이 과도하다거나 검찰의 기소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등의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다. 반면, 보수신문은 '국민 신뢰 허물어 사법부 독립 위협하는 사법부(조선일보, 1. 18)'와 같이 사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전체적으로 평가형은 사건을 자기 입장에서 정의하거나 상대를 비판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갈등형'은 사법판결 결과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갈등을 부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 판결에 대한 강한 비판이나 상반된 반응을 대비시켜 헤드라인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대검, 강기갑 '국회 폭력' 판결에 공개 비판(중앙일보, 1. 16)', '검찰 '강기갑 무죄' 비난에 법원 "사법권 독립 훼손 우려"(한겨레, 1. 16)'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의문형'은 '대법, 검찰 · 보수언론 등 비판 왜(경향신문, 1. 16)', '같은 시국선언 '무죄-유죄' 두 판결 왜?(중앙일보, 2. 5)', ''피디수첩 광우병보도 무죄' … 의사협, 뒤늦은 이의제기 왜?(한겨레, 2. 19)'와 같이 의문을 제기하는 형식이다. 의문에 대한 답은 기사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다. 보통 의문형의 경우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거나 사건과 관련된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을 제공하고자 할 때 활용되었다. '요구형'은 사설/칼럼에서 많이 사용되었으나 다른 기사 유형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3) 헤드라인 논조

'헤드라인 논조'는 판결내용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중립적인 헤드라인 논조가 많이 나타났다. 중립적이라는 것은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제시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고, 기타는 판결내용에 대한 태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을 분류한 것이다.

중립적인 논조를 제외하면 보수신문은 불일치한 경우 43.2%가 비판적인 논조를 사용했고, 진보신문은 일치하는 경우에 27.3%가 옹호적인 논조를 사용했다(<표 4> 참조). 보수나 진보신문 모두 자신의 성향과 반대되는 논조의 헤드라인을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헤드라

<표 4> 신문성향별 일치도에 따른 헤드라인 논조

단위: 건(%)

구 분	보수성향			진보성향			전 체
	일 치	불일치	소 계	일 치	불일치	소 계	
옹호적	–	2(2.5)	2(2.1)	15(27.3)	–	15(23.8)	17(10.8)
중립적	14(100.0)	31(38.3)	45(47.4)	29(52.7)	8(100.0)	37(58.7)	82(51.9)
비판적	–	35(43.2)	35(36.8)	1(1.8)	–	1(1.6)	36(22.8)
기 타	–	13(16.0)	13(13.7)	10(18.2)	–	10(15.9)	23(14.6)
계	14(100.0)	81(100.0)	95(100.0)	55(100.0)	8(100.0)	63(100.0)	158(100.0)

인 구성에 있어 자신들의 성향을 꽤 많이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헤드라인만 읽고 지나가는 독자가 많기 때문에 신문사들은 헤드라인 내에 자신들의 입장을 표현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3. 기사 본문 구성의 특성

(1) 기사 논조

'기사 논조'란 판결에 대한 기사의 태도가 옹호적인지 혹은 비판적인지를 분석한 것이다. 중립적이란 단순히 사실만을 제시하거나 사법판결에 대한 태도를 유추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중립적인 기사가 61.4%로 많았으나 보수신문(53.7%)과 진보신문(73.0%)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표 5> 참조). 그러나 보수신문도 성향이 일치하는 판결에 대해서는 100%의 중립적인 논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성향에 따른 차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일치하는 판결에 대해 중립적인 논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판결내용 자체가 자신들의 논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논조로 판결내용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입장이 반영되기 때문일 것이다.

보수성향과 불일치한 판결에 대해 보수신문은 51.9%를 비판적 논조로 구성하고, 진보신문은 일치한 판결에 대해 30.9%를 옹호적 논조로 구성했다. 기사의 논조는 직접적으로 옹호나 비판을 가하는 형태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거나 인터뷰를 통해 간접적으로 옹호 혹은 비판하는 기사들도 다수 발견되었다. 전체적으로 중립적인 기사를 빼면 거의 대부분을 양측 모두 자사의 입장과 일치하는 기사와 구성한 것이다. 즉, 자사와 다른 입장의 논조들은 거의 독자들에게 노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중립적인 논조의 기사가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진보성향의 판결 결과를 비판한 기사가 많았던 보수신문보다 진보신문에서 중립적 논조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2) 기사의 주요 쟁점

'기사의 주요 쟁점'이란 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를 의미한다.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를 제외하면, 신문성향에 따라 보수신문은 판결법리(35.8%)를, 진보신문은 언론이나 여당, 보수단체 등이 판결을 비판하는 것에 대한 비판(17.5%)을 가장 많이 주요 쟁점으로 삼았다(<표

<표 5> 신문성향별 일치도에 따른 기사 논조

단위: 건(%)

구 분	보수성향			진보성향			전 체
	일 치	불일치	소 계	일 치	불일치	소 계	
옹호적	–	2(2.5)	2(2.1)	17(30.9)	–	17(27.0)	19(12.0)
중립적	14(100.0)	37(45.7)	51(53.7)	38(69.1)	8(100.0)	46(73.0)	97(61.4)
비판적	–	42(51.9)	42(44.2)	–	–	–	42(26.6)
계	14(100.0)	81(100.0)	95(100.0)	55(100.0)	8(100.0)	63(100.0)	158(100.0)

6> 참조). 보수신문은 판결법리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면서, 그런 판결이 나온 배경으로 판사의 소양(8.4%)이나 사법정책 또는 제도의 개혁(6.3%)을 주장하는 것까지 확대되기도 하였다. 반면, 진보신문은 이를 쟁점으로 삼은 것이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분석대상 판결의 상당수가 진보성향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강기갑 의원 국회 사건'과 '전교조 시국 선언'의 경우 기존의 비슷한 사건과의 판결결과를 비교하며 판결형평성(4.9%)을 문제삼기도 하였다. 보수신문 기사의 대부분이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반응이나 그로 인해 유발될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반응 및 효과'를 주요 쟁점으로 삼는 경우는 2.1%에 지나지 않았다. 보수성향의 불일치에서 '판결비판에 대한 비판'이 1건 나온 것은 대법원장이 판결에 대한 언론 비판이 정도(正道)를 벗어났다고[5] 비판한 내용을 조선일보가 기사화했기 때문이다.

한편, 진보신문의 주요 쟁점은 좀 더 단순하게 나타났다. 단순히 사실을 제시하는 기사 외에 '판결비판에 대한 비판'을 주요 쟁점으로 하는 기사가 많았다.[6] 판결법리에 대해서는 15.9%가 주요쟁점으로 다뤄졌고, '판결반응과 효과'를 주요 쟁점으로 구성한 것은 오히려 보수신문보다 높게 나타났다.

(3) 기사의 쟁점 제시방식

'기사의 쟁점 제시방식'이란 기사 내에서 상반된 입장을 균형 있게 제시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분석한 것이다. 성향별로 보수신문은 한쪽입장만 제시한 경우(43.2%)가 더 많았고, 진보신문은 균형제시한 경우(41.3%)가 더 많았다(<표 7> 참조). 이는 진보성향의 판결이 많았기 때문에 보수신문이 이를 비판하는 기사를 많이 구성했고,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대상을 인터뷰한 기사 12건이 포함되어 있기

<표 6> 신문성향별 일치도에 따른 주요 쟁점

단위: 건(%)

구 분	보수성향			진보성향			전 체
	일 치	불일치	소 계	일 치	불일치	소 계	
판결법리	–	34(42.0)	34(35.8)	10(18.2)	–	10(15.9)	44(27.8)
사법정책 및 제도	–	6(7.4)	6(6.3)	–	–	–	6(3.8)
판사의 소양	–	8(9.9)	8(8.4)	–	–	–	8(5.1)
판결비판에 대한 비판	–	1(1.2)	1(1.1)	11(20.0)	–	11(17.5)	12(7.6)
단순사실 전달	14(100.0)	26(32.1)	40(42.1)	27(49.1)	8(100.0)	35(55.6)	75(47.5)
판결형평성	–	4(4.9)	4(4.2)	–	–	–	4(2.5)
판결반응 및 효과	–	2(2.5)	2(2.1)	7(12.7)	–	7(11.1)	9(5.7)
계	14(100.0)	81(100.0)	95(100.0)	55(100.0)	8(100.0)	63(100.0)	158(100.0)

5) '李대법원장, 판결 비판 언론 등 맹비난(조선일보, 4. 24)'
6) '보수시위마다 '출동'하는 어르신들(한겨레, 1. 22)', '정치권 · 언론, 판결에 도 넘는 비판말라(경향신문, 4. 24)' 등

<표 7> 신문성향별 일치도에 따른 기사의 쟁점 제시방식

단위: 건(%)

구 분	보수성향			진보성향			전 체
	일 치	불일치	소 계	일 치	불일치	소 계	
균형제시	–	15(18.5)	15(15.8)	26(47.3)	–	26(41.3)	41(25.9)
한쪽입장 제시	–	41(50.6)	41(43.2)	13(23.6)	–	13(20.6)	54(34.2)
단순 사실보도	14(100.0)	25(30.9)	39(41.1)	16(29.1)	8(100.0)	24(38.1)	63(39.9)
계	14(100.0)	81(100.0)	95(100.0)	55(100.0)	8(100.0)	63(100.0)	158(100.0)

때문에 한쪽 입장만을 제시하는 기사가 많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4) 복잡성

'복잡성'은 하나의 기사 내에 사건의 단계인 원인, 과정, 결과, 반응, 대안제시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성향에 관계없이 1개 요소만을 포함하는 경우가 가장 많게 나타났다(<표 8> 참조). 이런 결과는 사건에 대한 설명 없이 판결에 대한 '반응(38.6%)'이나 '결과(12.0%)'인 판결 내용만을 전달하는 기사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2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32.3%)가 많았는데, 진보신문(34.9%)이 보수신문(30.5%)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2개 요소에는 여러 가지 결합 형태가 나타났는데, '결과+반응(17.7%)', '과정+결과(8.2%)'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유형들은 1~3건 정도만 나타났다. 3개 요소를 포함한 기사는 '원인+과정+결과(3.2%)'가 가장 많았고, '과정+결과+반응(1.9%)', '원인+결과+반응(1.3%)', '원인+반응+대안(0.6%)'로 구성되었다. 4개 요소가 포함된 것은 '원인+과정+결과+반응'으로 5.1%로 나타났고, 5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된 것은 한 건도 없었다. '없음'은 5가지 요소 중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 경우였다.

선행연구들은 언론보도가 심층적인 보도가 부족하고, 사건의 근본원인을 설명하거나 사회구성원들의 반응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최소화하고 현상적인 기술에만 집중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강명구, 1990; 김동규, 2001; 손승혜, 1999;

<표 8> 신문성향별 일치도에 따른 복잡성

단위: 건(%)

구 분	보수성향			진보성향			전 체
	일 치	불일치	소 계	일 치	불일치	소 계	
1개 요소	8(57.1)	42(51.9)	50(52.6)	29(52.7)	1(12.5)	30(47.6)	80(50.6)
2개 요소	5(35.7)	24(29.6)	29(30.5)	15(27.3)	7(87.5)	22(34.9)	51(32.3)
3개 요소	–	5(6.2)	5(5.3)	6(10.9)	–	6(9.5)	11(7.0)
4개 요소	1(7.1)	5(6.2)	6(6.3)	2(3.6)	–	2(3.2)	8(5.1)
없음	–	5(6.2)	5(5.3)	3(5.5)	–	3(4.8)	8(5.1)
계	14(100.0)	81(100.0)	95(100.0)	55(100.0)	8(100.0)	63(100.0)	158(100.0)

이준웅, 황유리, 2004). 이런 결과와 비교해볼 때, 사법판결관련 뉴스의 복잡성은 다른 주제의 뉴스보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면서도 조금 다른 면모를 보인다. 비슷한 점은 다른 주제의 뉴스와 동일하게 복잡성 요소를 1~2개(82.9%)를 포함한 기사가 다수로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독자들이 이해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안제시'가 1.9%(3건)로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주제에 대한 뉴스들이 사건의 '과정'에 대한 현상적인 기술에 집중된 반면, 사법판결 보도는 '과정(20.9%, 33건)'을 포함한 기사는 적고, '반응(68.4%, 108개)'을 포함한 기사가 많은 것이 차별점이다. 이는 사법판결을 놓고 워낙 사회적으로 첨예한 의견대립이 존재했던 만큼 그에 대한 반응들이 많이 기사화되었기 때문이다.

(5) 프레임 분석

아이엔거(1991)의 일화적 프레임과 주제적 프레임을 적용한 결과, 신문성향에 관계없이 일화적 프레임이 74.7%로 많게 나타났다(<표 9> 참조). 일화적 프레임의 비율이 높은 것은 다른 주제의 뉴스를 분석한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이다(김선남, 2002; 양정혜, 2001; Entman, 1993; Iyengar & Simon, 1993). 일화적 프레임은 사건의 책임을 사건 당사자에게 돌림으로써 그 사건을 가능케 한 사회제도나 구조를 존속시킬 위험을 가지고 있다.

한편, 주제적 프레임에서 많이 고려된 맥락은 진보적 성향의 판결이 나오게 되는 배경과 관련된 것이었다. 특히 진보성향의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많이 언급되었는데, 보수측과 여당은 진보성향의 판사들의 이념적 편향이 '황당한(조선일보, 1. 15)', '튀는(조선일보, 1. 16)', '문제적(조선일보, 1. 16)' 판결을 만들어냈다며 '우리법연구회'를 해체를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여당은 사법제도의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장은 '정치권, 언론, 판결에 도 넘는 비판말라(경향신문, 4. 24)'며 사법권의 독립을 강조했고, 진보신문들은 언론의 사법판결을 비판하는 보도행태, 보수단체의 시위 등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였다. 또한, 기소 자체를 여당이 국정이나 여론을 장악하는 방법으로(경향신문, 1. 21), 법원에 대한 비판을 여당의 색깔공세(한겨레, 1. 20)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아이엔거(1991)는 주제적 프레임이 사건의 책임을 사회구조적, 정치적, 일반적인 차원에서 속성화

<표 9> 신문성향별 일치도에 따른 프레임 구성

단위: 건(%)

구 분	보수성향			진보성향			전 체
	일 치	불일치	소 계	일 치	불일치	소 계	
일화적	11(78.6)	57(70.4)	68(71.6)	43(78.2)	7(87.5)	50(79.4)	118(74.7)
주제적	3(21.4)	24(29.6)	27(28.4)	12(21.8)	1(12.5)	13(20.6)	40(25.3)
계	14(100.0)	81(100.0)	95(100.0)	55(100.0)	8(100.0)	63(100.0)	158(100.0)

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주제적 프레임은 사건 당사자의 차원을 넘어 사건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바라봄으로써 사건의 해결방안을 보다 근본적인 구조에서 모색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나타난 주제적 프레임은 사건의 맥락을 파악하기 보다는 상대편을 공격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논거로써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6) 취재원

취재원은 직접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누군가의 말을 인용한 것을 분석한 것이다. 인터뷰는 취재원의 입장에서 사건을 정의할 수 있고, 호소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취재원의 특성은 뉴스의 구성방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취재원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동시제시 여부

'동시제시 여부'는 판결에 대해 옹호하는 측과 비판하는 측의 취재원을 모두 활용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취재원을 활용한 기사가 총 99건으로 나타났는데, 신문성향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보수신문이 취재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판결에 대해 비판하는 취재원을 많이 인용했기 때문이다. 성향별로 보면, 보수신문은 불일치한 경우 80.6%를 비판적인 취재원으로 구성했고, 옹호측만 제시한 경우는 1.6%에 지나지 않았다. 판결내용을 설명하면서 옹호측의 논리가 이미 포함됐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7] 판결에 대해 비판만을 독자에게 과도하게 노출할 경우, 독자들에게 판결반응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한편, 일치한 경우는 취재원의 활용이 많지는 않았지만, 판결내용을 소개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반대편 취재원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진보신문은 일치하는 경우 동시제시한 비율이 59.4%로 높게 나타났고, 옹호측만 제시한 것은 25.0%였다.

"신문들은 판결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균형 있게 제시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런 경향은 독자들에게 판결 반응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표 10〉 신문성향별 일치도에 따른 취재원 분포

단위: 건(%)

구 분	보수성향			진보성향			전 체
	일 치	불일치	소 계	일 치	불일치	소 계	
동시제시	–	11(17.7)	11(17.2)	19(59.4)	–	19(54.3)	30(30.3)
옹호측만 제시	–	1(1.6)	1(1.6)	8(25.0)	–	8(22.9)	9(9.1)
비판측만 제시	2(100.0)	50(80.6)	52(81.3)	5(15.6)	3(100.0)	8(22.9)	60(60.6)
계	2(100.0)	62(100.0)	64(100.0)	32(100.0)	3(100.0)	35(100.0)	99(100.0)

7) '비판측만 제시' 한 기사의 35.0%(21건)는 판결내용을 인용하고 있었다.

나. 취재원 유형

취재원 유형을 다중응답으로 분석한 결과, 성향별로 차이가 나타났다(<표 11> 참조). 보수신문은 불일치한 판결에서 법조인[8]을 가장 많이 활용하였다(33.3%). 이는 담당판사와 동등한 전문성을 가진 판사나 변호사들의 의견을 활용하는 것은 판결법리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취재원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양측은 자신들의 성향과 반대되는 의견을 표명한 법조인을 취재원으로 거의 활용하지 않았다. 한편, 진보신문은 일치하는 판결에 대해 옹호하는 취재원으로 전문가(27.1%)를 가장 많이 활용하였다. 전문가의 의견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거나 반대로 전문가가 한쪽 입장에서 평가를 내리거나 편을 드는 기능을 한다(박명진 외, 1991). 이 연구의 결과에서 전문가(법조인 포함) 활용 빈도를 보면, 보수신문은 판결내용을 비판하고, 진보신문은 옹호하는 내용의 전문가 의견을 절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신문들이 중립적인 의견으로서 전문가를 취재원으로 활용하기보다 자신들의 입장에 공신력을 더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여당과 검찰, 담당판사는 양측 모두에서 비슷하게 활용되었다. 이는 검찰이나 여당이 무죄판결에 대해 비난하는 발언을 인용한 것이다. 그러나 진보측과 성향이 같은 야당에 대해서는 보수측에서는 많이 인용하지 않은 반면, 진보측에서는 일치하는 판결에 대해 22.0%나 인용하였다.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에서 비슷한 빈도로

<표 11> 신문성향과 일치도에 따른 취재원 유형

단위: 건(%)

구 분	보수성향				진보성향				전 체
	일 치		불일치		일 치		불일치		
	옹 호	비 판	옹 호	비 판	옹 호	비 판	옹 호	비 판	
법조인	–	2(66.7)	4(20.0)	39(33.3)	8(13.6)	–	–	–	53(21.8)
검 찰	–	1(33.3)	–	20(17.1)	–	11(26.8)	–	–	32(13.2)
여 당	–	–	–	14(12.0)	2(3.4)	17(41.5)	–	–	33(13.6)
야 당	–	–	1(5.0)	1(0.9)	13(22.0)	–	–	–	15(6.2)
담당판사	–	–	4(20.0)	–	6(10.2)	–	–	–	10(4.1)
일반인	–	–	1(5.0)	6(5.1)	–	–	–	–	7(2.9)
고소인	–	–	–	8(6.8)	–	2(4.9)	–	–	10(4.1)
피고소인	–	–	5(25.0)	–	4(6.8)	–	–	3(100.0)	12(4.9)
시민단체	–	–	2(10.0)	3(2.6)	7(11.9)	5(12.2)	–	–	17(7.0)
전문가	–	–	2(10.0)	14(12.0)	16(27.1)	1(2.4)	–	–	33(13.6)
관련부처	–	–	1(5.0)	8(6.8)	3(5.1)	5(12.2)	–	–	17(7.0)
증 인	–	–	–	4(3.4)	–	–	–	–	4(1.6)
계	–	3(100.0)	20(100.0)	117(100.0)	59(100.0)	41(100.0)	–	3(100.0)	243(100.0)

8) 일반적으로 법조인은 전문인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연구가 사법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문가에서 법조인과 비법조인의 구분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법조인을 전문가와 별도로 구분하였다.

나타났으나 고소인에 대해서는 보수신문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증인은 피고소인측에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으로 보수측에서만 인용되었다. 한편, 보수성향과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의 반응이 첨예했는데, 양측 모두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균형 있게 의견을 제시하였다. 취재원으로서 가장 많이 활용되지 못한 것은 일반인들이었다. 보수측에서만 7건 나타났는데, 대부분 인터넷 댓글을 인용한 것이다. 결국 사법판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나 반응은 언론이 거의 다루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은 이 문제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구경꾼에 머물게 한 것이다.

다. 취재원 실명 제시

취재원을 사용함에 있어 실명을 사용하는 정도를 파악하였다. 전체적으로 취재원 243명 중에 128명인 52.7%가 실명을 밝히고 있었다. 성향별로는 보수신문이 취재원 140명 중에 62명인 44.3%를, 진보신문이 취재원 103명 중에 66명인 64.1%를 실명으로 인용하여 진보신문의 실명제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일치여부에 따라 비교해보면(<표 12> 참조), 중립적인 논조에 사실전달 중심의 기사가 대부분이었던 보수신문의 일치와 진보신문의 불일치에서는 거의 취재원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 보수신문에서는 불일치의 경우 판결에 대해 옹호적인 취재원보다 비판적인 취재원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진보성향에서는 일치한 경우 옹호적인 논조의 실명 취재원이 많기는 했지만, 비판적인 논조의 실명 취재자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코바치와 로젠스틸(Kovach & Rosenstiel, 2001)은 취재원의 실명이 취재의 투명성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지역법원의 한 부장판사', '전직판사 출신 변호사', '검찰 관계자' 등과 같은 익명의 취재원은 취재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따라서 취재원 보호 등의 이유로 익명 보도가 불가피한 것을 인정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실명으로 취재원을 제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한국언론재단, 2001에서 재인용).

"사법판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나 반응을 언론이 거의 다루지 않음으로써 일반 국민들은 논쟁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구경꾼에 남게 되는 경향이 있다"

라. 취재원 쟁점

'취재원 쟁점'이란 취재원이 말한 내용을 다중 응답으로 분석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판결법리'에 대

<표 12> 신문성향과 일치도에 따른 실명 취재원 수

구 분	보수성향				진보성향				전 체
	일 치		불일치		일 치		불일치		
	옹 호	비 판	옹 호	비 판	옹 호	비 판	옹 호	비 판	
전체 취재원수(명)	–	3	20	117	59	41	–	3	243
실명 취재원수(명)	–	–	8	54	38	27	–	1	128
전체 대비 실명 취재원 비율(%)	–	0	40.0	46.2	64.4	65.9	–	33.3	52.7

해 언급한 취재원(42.8%)이 가장 많이 인용되었으며, '판사의 소양(15.2%)', '판결비판에 대한 비판(14.8%)'이 그 다음으로 많게 나타났다.

신문성향별 취재원 쟁점 구성에서는 양측이 거의 비슷한 양상을 드러냈다. 즉, 진보성향과 일치한 판결에 대해 보수신문과 진보신문 모두 비판적인 취재원의 쟁점으로는 판결법리와 판사의 소양을, 옹호적인 취재원의 쟁점으로는 판결비판에 대한 비판, 기소 자체 비판, 판결법리 등을 많이 인용하였다. 전체적으로 자사와 일치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을 더 많이 취재원으로 활용하여 빈도에서는 차이가 있었으나 쟁점을 구성하는 비율은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었다.

4. 사설/칼럼 구성의 특성

(1) 사설/칼럼 논조

사설/칼럼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기 때문에 사법판결에 대한 신문사의 입장을 보다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사설/칼럼은 35건으로 많지 않았는데, 보수신문이 20건, 진보신문이 15건으로 나타났다(<표 14> 참조). 보수신문은 자신의 성향과 불일치 판결에 대한 사설/칼럼 14건 중에 13건(92.3%)을 비판적인 논조로 구성하였고, 1건(7.7%)은 중립적인 논조로 구성하였다. 옹호적인 논조는 1건도 없었는데, 진보성향 역시 일치하는 판결

<표 13> 신문성향별 일치도에 따른 취재원 쟁점

단위: 건(%)

구 분	보수성향				진보성향				전 체
	일 치		불일치		일 치		불일치		
	옹 호	비 판	옹 호	비 판	옹 호	비 판	옹 호	비 판	
판결법리	–	1(33.3)	5(25.0)	65(55.6)	9(15.3)	22(53.7)	–	2(66.7)	104(42.8)
사법정책 및 제도	–	–	1(5.0)	14(12.0)	–	2(4.9)	–	–	17(7.0)
판사의 소양	–	–	–	24(20.5)	2(3.4)	11(26.8)	–	–	37(15.2)
판결비판에 대한 비판	–	–	7(35.0)	1(0.9)	28(47.5)	–	–	–	36(14.8)
판결형평성	–	2(66.7)	2(10.0)	2(1.7)	–	–	–	–	6(2.5)
기소 자체 비판	–	–	4(20.0)	–	17(28.8)	–	–	–	21(8.6)
판결반응 및 효과	–	–	1(5.0)	11(9.4)	3(5.1)	6(14.6)	–	1(33.3)	22(9.1)
계	–	3(100.0)	20(100.0)	117(100.0)	59(100.0)	41(100.0)	–	3(100.0)	243(100.0)

<표 14> 신문성향별 일치도에 따른 사설/칼럼의 논조

단위: 건(%)

구 분	보수성향				진보성향				전 체
	일 치	불일치	혼 합	소 계	일 치	불일치	혼 합	소 계	
옹호적	–	–	–	–	12(100.0)	–	2(100.0)	14(93.3)	14(40.0)
중립적	–	1(7.7)	3(50.0)	4(20.0)	–	1(100.0)	–	1(6.7)	5(14.3)
비판적	–	13(92.3)	3(50.0)	16(80.0)	–	–	–	–	16(45.7)
계	–	14(100.0)	6(100.0)	20(100.0)	12(100.0)	1(100.0)	2(100.0)	15(100.0)	35(100.0)

에서 비판적인 논조를 사용한 것은 1건도 없었다.

(2) 사설/칼럼 작성자

사설/칼럼 작성자는 대부분 내부 기자나 논설위원회에 의해 작성되었다(<표 15> 참조). 외부 기고자는 교수가 가장 많게 나타났고, 보수신문에서는 변호사가 1건 나타났다. 반면, 진보성향에서는 피고소인이 작성자인 사례가 1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사설/칼럼은 내부 필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고, 외부 기고자의 활용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었다. 그로 인해 작성자의 유형도 다양하지 못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3) 사설/칼럼 주요 쟁점

사설/칼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주제는 신문성향별로 조금 차이가 나타났다(<표 16> 참조). 보수신문의 경우 60.0%가 판결법리를 주요 쟁점으로 선택하였으며, 판결에 대한 평가나 파생될 부정적인 효과를 논하는 내용도 15.0%로 나타났다. 반면, 진보측은 '판결비판에 대한 비판(33.3%)'과 '판결반응 및 효과(33.4%)'를 주요 쟁점으로 많이 선택하였다. 아무래도 진보성향과 일치하는 판결이 많다보니 판결법리 자체보다는 판결결과를 비판하는 상대편을 비난하는 내용이 많이 다뤄진 것 같다.

<표 15> 신문성향별 일치도에 따른 사설/칼럼의 작성자

단위: 건(%)

구 분	보수성향				진보성향				전 체
	일 치	불일치	혼 합	소 계	일 치	불일치	혼 합	소 계	
기자(논설위원)	–	13(92.9)	4(66.7)	17(85.0)	10(83.3)	–	1(50.0)	11(73.3)	28(80.0)
교 수	–	1(7.1)	1(16.7)	2(10.0)	1(8.3)	1(100.0)	1(50.0)	3(20.0)	5(14.3)
변호사	–	–	1(16.7)	1(5.0)	–	–	–	1(2.9)	
피고소인	–	–	–	–	1(8.3)	–	–	1(6.7)	1(2.9)
계	–	14(100.0)	6(100.0)	20(100.0)	12(100.0)	1(100.0)	2(100.0)	15(100.0)	35(100.0)

<표 16> 신문성향별 일치도에 따른 사설/칼럼의 주요 쟁점

단위: 건(%)

구 분	보수성향				진보성향				전 체
	일 치	불일치	혼 합	소 계	일 치	불일치	혼 합	소 계	
판결법리	–	10(71.4)	2(33.3)	12(60.0)	2(16.7)	–	–	2(13.3)	14(40.0)
사법정책 및 제도	–	–	2(33.3)	2(10.0)	1(8.3)	–	–	1(6.7)	3(8.6)
판사의 소양	–	1(7.1)	–	1(5.0)	–	–	–	–	1(2.9)
판결비판에 대한 비판	–	1(7.1)	1(16.7)	2(10.0)	4(33.3)	–	1(50.0)	5(33.3)	7(20.0)
기소자체 비판	–	–	–	–	1(8.3)	–	1(50.0)	2(13.3)	2(5.7)
판결반응 및 효과	–	2(14.3)	1(16.7)	3(15.0)	4(33.3)	1(100.0)	–	5(33.4)	8(22.9)
계	–	14(100.0)	6(100.0)	20(100.0)	12(100.0)	1(100.0)	2(100.0)	15(100.0)	35(100.0)

Ⅴ. 결 론

이상으로 사법판결과 관련된 언론보도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몇 가지 언론보도의 특징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헤드라인이나 기사 본문 구성에서 보수신문이나 진보신문이 전반적으로 자신들의 성향과 일치하는 논조의 기사나 취재원 활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이 특정 성향을 띠고 있다는 것을 독자들이 감안하여 읽는다 하더라도 객관성과 공정성은 여전히 언론이 따라야할 규범이다. 따라서 나름대로의 성향을 반영하더라도 한쪽의 시각만 과도하게 노출하고, 반대편의 시각은 제공하지 않는 것은 여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성의 기사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언론은 판결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사건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른 주제의 뉴스보도와 마찬가지로 사법판결관련 보도 역시 복잡성이 낮아 국민들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드러냈다. 분석대상이 된 사법판결은 이미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갈등의 표출로서 소송이 제기된 것이므로 판결 이전의 사건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석결과를 보면, 사건에 대한 설명 없이 판결에 대한 반응이나 결과만을 제시하는 기사가 매우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판결과 관련된 전체적인 상황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복잡성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뉴스를 구성하는 방식에서 주제적 프레임을 더 많이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일화적 프레임은 사건이 사회적으로 갖는 의미를 수용자들에게 이해시키기 어렵고, 사건의 원인이나 해결책을 사건 당사자들에게서만 찾기 때문에 사건을 유발한 사회구조적인 모순이나 정책적인 오류를 그대로 존속시킬 위험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의 사회 이슈에 대한 정보를 미디어를 통해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거시적인 맥락 속에서 사건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언론이 통찰력 있는 시각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나타난 주제적 프레임처럼 판사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판결과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판사의 소속단체를 문제로 삼는 것은 올바른 접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접근은 판결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집 앞에 찾아가 항의하는 것 같은 감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은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식과 사실에 근거한 통찰력 있는 분석으로 사건을 거시적인 맥락 속에 바라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취재원 활용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사법판결이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 법조인과 전문가 위주로 취재원이 편중되어 있는 특성을 나타냈다. 법조인과 전문가를 취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판결이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분야인 만큼 공신력 있는 화자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일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자신들의 견해와 일치하는 의견만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조인이나

전문가의 의견이 중립적으로 제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취재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재원의 유형을 다양화하여 다양한 계층의 반응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인 만큼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의견이 거의 기사화되지 못함으로써 구경꾼으로 남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취재원이 일부에 국한되어 있는 것과 일반 국민들이 취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한국 신문의 취재원 사용 관행으로 이미 지적(홍권희, 2008)된 바 있다. 따라서 이런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고, 일반 국민들이 사회적 이슈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언론이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반응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사법판결 관련 언론보도의 특성을 파악하고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글을 마치며 이 연구결과를 활용하는 데 주지할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진보성향과 일치한 판결이 절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었다. 일부 보수성향과 일치한 판결이 있기는 하지만, 기사량이 적어 일반적인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조선일보의 기사량이 다른 신문에 비해 상당히 많았다는 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거나 활용하는 데 있어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주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강명구 (1990). 한국 TV뉴스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분석. 한국언론연구원(편), 『TV뉴스 보도』.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김경호 (2004).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침해에 관한 연구. 『언론과 사회』, 12(2), 88~120.

김계춘 (2007). 『언론의 재 · 보궐 선거보도 분석: 노무현 정부시대, 신문과 방송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동규 (2001). 사회갈등 보도의 새로운 방향 찾기. 『한국언론학보』, 45(1), 5~32.

김서중 (2007). '헤드라인 저널리즘'의 역기능과 해결방안. 『언론중재』, 봄호(통권 102호), 18~28.

김선남 (2002). 매매춘 관련 TV뉴스의 프레임 분석. 『한국방송학보』, 16(2), 41~76.

김선택 (2004). 언론보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명예훼손소송에 있어 공적인물이론과 현실적 악의의 원칙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43, 183~218.

김성호 (1993). 한국방송관련 신문사설에 관한 연구. 『신문과 방송』, 375, 139~141.

김영준 (2004). 한국 신문의 이념 스펙트럼: 일간지 사설분석 및 기자빈도와 이념성향의 관계 연구. 『언론연구논집』, 37, 43~112.

김효진 (2009). 『한겨레 신문과 조선일보의 사설비교 연구: 20년간 사설의 의제와 프레임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남재일 (2004). 『이라크 전쟁보도의 프레임과 담론』. 한국언론재단 연구서 2004-10.

박명진, 김창남, 조항제, 손병우 (1991). 한국 TV탐사보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사회고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TV의 사회고발 프로그램』. 한국언론연구원연구서 ⑬.

박 철 (1999). 무책임한 언론에 대한 사법의 통제. 『시민과 변호사』, 62, 85~90.

손승혜 (1999). 『TV저널리즘과 뉴스가치 (I): 한국, 영국, 미국의 TV뉴스 분석』. 한국언론재단 연구서 99-01.

양정혜 (2001). 사회갈등의 의미 구성하기: 의료분쟁 보도의 프레임 분석. 『한국언론학보』, 45(2), 284~315.

육정수 (2002). 『신문보도에 의한 피의자 인권침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성옥 (2008). 사법 보도와 표현의 자유범위에 관한 연구: 판검사가 제기한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2(2), 420~462.

이상국 (2007). 헤드라인 저널리즘의 이상과 현실: 편집기자가 말하는 헤드라인 저널리즘의 실체. 『언론중재』 봄호(통

권 102호), 29~38.

이승선, 김연식 (2008).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와 문제점. 『사회과학연구』,19(3), 65~94.

이원섭 (2007). 노무현 정부시기 남북문제에 대한 언론 보도 분석: 조선 · 중앙 · 동아일보와 한겨레 · 경향 · 서울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동아연구』, 52, 325~366.

이준웅 (2001). 갈등적 이슈에 대한 뉴스 프레임 구성방식이 의견형성에 미치는 영향: 내러티브 해석모형의 경험적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6(1), 441~482.

이준웅, 황유리 (2004). 한국형 방송 뉴스 도식의 발견: 뉴스의 내용적이며 구성적 특성과 뉴스 제작 시스템. 『한국방송학보』, 18(3), 232~292.

이재진 (2005). 언론윤리에 대한 언론과 사법부간의 인식 차이에 대한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6(1), 6~32.

이진로 (2000). 한국 신문 사설에 나타난 인터넷 담론 형성 구조 연구. 『영산논총』, 6, 213~235.

장호순 외 (2001). 『보도비평: 한 · 미 신문의 취재원 이용 관행』. 서울: 한국언론재단 .

정윤수, 정석영 (2001). 신문사설이 지방자치시대의 정부간 갈등해소에 미치는 영향분석. 『지방정부연구』, 4(2), 71~90.

한국언론재단 (2007). 『한 · 미 신문의 기사형식과 내용』. 한국언론재단 연구서 2007-.3.

한위수 (1994). 법관이 본 사법관련보도의 문제점과 제언. 『언론중재』, 52, 18~26.

홍권희 (2008). 『한국 신문의 취재원 사용관행 연구: 혁신도시 보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3), 51~58.

Iyengar, S. (1991).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Iyengar, S., & Simon, A. (1993). News coverage of the gulf crisis and public opinion: A study of agenda-setting, priming and framing. ***Communication Research, 20***(3), 365~383.

Kovach, B. & Rosenstiel, T (2001). ***The elements of journalism: What news people should know and the public should expect***. NY: Crown Publishers.

McQuail, D. (1992). ***Media performance***. London: SAGE.